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49호 2010. 8. 23. (월)

고 시	
-----	--

- 고시 제2010-63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고시].....2
- 고시 제2010-65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3

공 고	
-----	--

- 공고 제2010-5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7
- 공고 제2010-562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9
- 공고 제2010-5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
- 공고 제2010-5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3
- 공고 제2010-56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5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해제) 조서

대상시설(지역)			지정(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웰빙아파트	천곡동 674외 13	(주)웰건설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A	-	해 제
벽산블루밍 아파트	천곡동 582외 3	벽산건설(주)	"	A	-	해 제
힐스테이트 2차아파트	양정동 산107 외 11	현대건설(주)	"	A	-	해 제
메아리복지원 (식당동)	중산동 1028	송창길	건축물 철거	D	-	해 제
꿈에랜드	명촌동 106B 9L	조경희	관리미흡 시설등급 변경(A→B)	B		시설등급 변 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목적 및 변경사유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존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정비,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재해예방, 환경개선과 수질보전, 소하천의 다목적 관리이용, 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2001. 2. 울산광역시 복구)』가 수립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효문동 일원의 부지에 『울산모듈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소하천의 유로변경이 불가피한바 수리·수문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홍수로부터 안전한 소하천개수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대상 및 범위

수 계 명	소하천명	구 분	소 하 천 구 간		수립 연장 (km)
			시 점	종 점	
명 촌 천	울 등 천	당 초	복구 효문동 산34-1	복구 양정동 명촌천	1.85 (1.85)
		변 경	복구 효문동 934	복구 양정동 명촌천	1.85 (1.85)

※ ()는 소하천연장임.

3. 주요 변경사항

소하천명	유역면적 (km ²)		계획빈도 (년)		계획홍수량 (m ³ /sec)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울 동 천	2.77	2.67	50	50	14 ~54	11.89 ~55.50	3.5 ~15.0	4.0 ~15.0

4. 유역 현황

소하천명	구 분	유역면적 (km ²)	유로연장 (km)	연평균 강수량 (mm)	갈 수 량 (Q ₃₅₅) (m ³ /sec)	저 수 량 (Q ₂₇₅) (m ³ /sec)	평 수 량 (Q ₁₈₅) (m ³ /sec)	풍 수 량 (Q ₉₅) (m ³ /sec)	기 준 갈 수 량 (m ³ /sec)
울 동 천	당 초	2.77	2.47	1,303.0	0.0054	0.0164	0.0193	0.0376	0.0023
	변 경	2.67	2.13	1,322.8	0.003	0.009	0.016	0.034	0.0010

5.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1) 당 초

소하천명	부 호	산정지점	유역 면적 (km ²)	계획 빈도 (년)	홍수량(m ³ /s)	
					기 본	계 획
울 동 천	UD0	울동천 하구	2.770	50	50	54
	UD1	제2울동천 합류후	2.560		54	54
	UD2	제2울동천 합류전	0.820		17	17
	UD3	울동3낙차공지점	0.548		14	14

2) 금 회

소하천명	부 호	산정지점	유역 면적 (km ²)	계획 빈도 (년)	홍수량(m ³ /s)	
					기 본	계 획
울 동 천	UD0	울동천 하구	2.67	50	55.50	55.50
	UD1	울동배수관 합류후	0.72		17.79	17.79
	UD2	울동배수관 합류전	0.49		11.89	11.89

6.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시설제방고

소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01종합계획	금 회	'01종합계획	금 회	좌 안	우 안	
울	0	0	3.81	3.79	15.0	15.0	2.14	2.14	BOX 복개구간 (No.1 ~ No.10)
	1	50	4.40	3.84	15.0	15.0	2.79	2.79	
	2	100	4.60	3.89	15.0	15.0	3.06	3.06	
	3	150	4.81	3.95	15.0	15.0	3.10	3.10	
	4	200	5.01	4.00	15.0	15.0	3.11	3.11	
	5	250	5.21	4.06	15.0	15.0	3.23	3.23	
	6	300	5.41	4.12	15.0	15.0	3.31	3.31	
	7	350	5.62	4.17	15.0	15.0	3.49	3.49	
	8	400	5.82	4.23	15.0	15.0	3.63	3.63	
	9	450	6.02	4.57	15.0	15.0	4.73	4.73	
동	10	500	6.48	6.92	15.0	15.0	7.19	7.19	
	10+20	520	6.61	6.99	15.0	15.0	8.17	8.17	
천	11	550	6.81	7.10	15.0	15.0	8.34	8.34	울동제1교
	11+13	563	6.97	7.15	15.0	15.0	8.48	8.48	BOX 복개구간 (No.11+13 ~ No.17+11)
	12	600	7.32	7.29	5.0	5.0	8.42	8.42	
	13	650	7.74	7.54	5.0	5.0	8.53	8.53	
	14	700	7.91	7.79	5.0	5.0	8.65	8.65	
	15	750	8.07	8.03	5.0	5.0	8.77	8.77	
	16	800	8.52	8.62	5.0	5.0	9.38	9.38	
	17	850	9.17	9.59	5.0	5.0	10.35	10.35	
	17+11	866	9.31	9.71	5.0	5.9	10.35	10.35	
17+40	890		10.01		4.0	11.61	11.61		
18	900		10.33		4.0	11.63	11.63	BOX암거	

※ 주) 유로변경구간은 시설제방고 대신 계획제방고이며, BOX암거구간의 제방고는 BOX암거의 상단고임

울 동 천	18+5	905	유 로 변 경 구 간	10.49	유 로 변 경 구 간	4.0	12.68	12.68	U형 개거구간 (No.18+5 ~ No.29+10)
	19	950		11.19		4.0	13.63	13.63	
	20	1,000		11.98		4.0	14.47	14.47	
	21	1,050		12.76		4.0	15.27	15.27	
	22	1,100		13.54		4.0	16.06	16.06	
	23	1,150		14.32		4.0	16.90	16.90	
	24	1,200		15.10		4.0	17.44	17.44	
	24+4	1,204		15.20		4.0	16.64	16.64	
	25	1,250		16.38		4.0	17.92	17.92	
	26	1,300		17.26		4.0	18.77	18.77	
	27	1,350		18.15		4.0	19.62	19.62	
	28	1,400		19.03		4.0	20.47	20.47	
	29	1,450		19.91		4.0	20.82	20.82	
	29+10	1,460		20.09		4.8	20.99	20.99	
	30	1,500		20.77		4.8	21.67	21.67	
	31	1,550		21.62		4.8	22.52	22.52	
	32	1,600		22.46		4.8	23.37	23.37	
	33	1,650		23.31		4.8	24.22	24.22	
	34	1,700		24.16		4.8	25.07	25.07	
	34+24.8	1,724.8	24.72	4.8	25.89	25.89			
35	1,750	25.07	25.28	6.6	5.0	25.99	25.99		
36	1,800	26.60	26.39	6.6	4.5	26.79	26.79		
37	1,850	28.13	28.32	3.5	4.5	28.72	28.72		

※ 주) 유로변경구간은 시설제방고 대신 계획제방고이며, BOX암거구간의 제방고는 BOX암거의 상단고임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서류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보고서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2)219-744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다음 항목을 신설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5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6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7호)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8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9호)

3. 근거법규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국가보훈지청의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면제관련 조례개정 요청 공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생활지원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322, FAX 219-73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가.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 나.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04. 1월 제정 ⇒ '08. 5월 폐지)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고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2004. 6. 7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미화과, 전화 219-7384, 팩스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배부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추진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되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무상교체 조항 신설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신규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전용수거용기 무상배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미화과, 전화 219-7384, 팩스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 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로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과정 없이 문서출력과 동시에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나오도록 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 (안 제5조의3 신설)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 가능 (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 (안 제12조제1항 신설)
-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 ※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 2010. 6. 15. 염포양정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및 문화강좌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립 도서관이 진정한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 요 내 용

- 염포양정도서관의 위치 표기(안 제2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의 소집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및 제9조)
- 구청장의 독서진흥 시책 마련과 문화강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자원봉사자 운영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19조)
- 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대해 모법인 도서관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함(안 제21조)

□ 의 견 제 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평생교육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담당(전화 052-219-7573, 팩스 052-219-78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 타 사 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